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330

발의연월일: 2025. 3. 25.

발 의 자 : 윤준병 · 신영대 · 박민규

문대림 • 박홍배 • 조계원

정동영 · 김한규 · 민병덕

박지원 · 김태년 · 김태선

장철민 · 허종식 · 송옥주

서영교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문화산업 발전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규정임에 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해당 분 야에 세제 지원을 지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세제 지원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의6).
- 나.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의7).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29년"으로 한다.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29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u>2025</u>	<u>2029</u>
<u>년</u>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u>년</u>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	
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	
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	
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	
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	
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	
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1. • 2. (생략)

②·③(생략)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 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 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 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 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 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 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 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 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2. (생략)

② · ③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	---	------	-----

네25조의7(내국학	법인의	문화신	·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		
액공제) ①					
<u>202</u>	<u> 29년</u>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